



양산시체육회

수신 양산시야구협회

(경유)

제목 관리단체 지정 알림(재송부)

- 관련근거 : 양산시체육회-1263(2024. 05. 02 소명기회 부여)호 및 양산시체육회 이사회(20224. 06. 14 서면결의)에 의거.
- 위 근거와 관련하여 **양산시야구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었음**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후 본회의 관리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관리단체 지정일 : 2024. 06. 14

나. 관리단체 지정사유 : 불임 자료 참조

다.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(관리단체 운영규정 제4조)

-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, 체육회가 해당 회원단체의 모든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.
- 해당 회원단체 임원 및 관계자는 회원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해당 회원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체육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-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회원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체육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에 관리단체 지정 해제를 통지하고, 해당 관리단체는 통지를 송달받는 즉시 체육회의 회원단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한다.
- 관리단체 지정 시 해당 회원단체의 대의원 중 회원종목단체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대의원(동호인클럽의 장)은 관리단체 지정일부더 2년간 소속 단체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다. 다만, 관리단체 운영 상황에 따라,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무 정지 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※ 현 야구협회 임원은 전원 자동 해임되었음.(2024. 06.14).

불임 관리단체 지정사유서 1부. 끝.

양 산 시 체 육 회



수신자

06/18

팀장 김진규 사무국장 안정수

협조자

접)협조

시행 양산시체육회-1652 (2024.6.18.)

접수

우 50619 경남 양산시 양산대로 849 (북부동, 양산종합운동장) 양산종합운동장내 양산시체육회 / www.ys7330.com

전화 055-365-7330 전송 055-383-2234 / yssports03@ys7330.com / 공개